

구매기본계약(대한민국)

1 계약 조건

- 1.1 본 “글로벌 구매기본계약”(이하 “구매기본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글로벌 마스터 구매 계약”(이하 “마스터 계약”)에 추가된다. 당사자 간에 관련 SOW나 “발주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급자”가 “마스터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모든 “제품” 또는 “용역”은 HPE의 판매 또는 내부 사용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재무 조건

- 2.1 가격. 달리 정하지 않는 한 SOW에 정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는 모든 제 비용 (교통비, 일당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 2.2 세금. 법령에 따라 HPE에 부과되는 세금, 즉 “제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GST(물품 및 용역세), PST(지방 판매세), 판매세, 사용세는 HPE가 부담한다. “공급자”의 순이익 또는 총수입, 자본금, 순자산액, 재산 또는 “공급자”나 “공급자”의 “임직원”에 대한 고용 관련 세금 등 “공급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당사자간에 다른 서면 합의가 없는 한, “공급자”의 “용역” 수행 또는 “제품”의 생산, 매매, 또는 임대, 또는 HPE, HPE의 “계열사”, 또는 HPE의 “고객”의 “용역”이나 “제품” 사용이 동일 국가에서 이뤄지는 경우, 대금 지급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해당 국가 내 소재하는 당사자간에 해결하기로 한다.

관련 법령 상 HPE 또는 HPE의 “계열사”가 이 계약에 따라 지급 하는 금액에서 원천징수 책임이 있는 경우, HPE나 관련 HPE “계열사”는 해당 금액을 원천 징수 후 지급한다.

- 2.3 청구서 제출. SOW 또는 계약 첨부 문서에 인수조건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어떠한 청구서도 “제품” 또는 “용역”의 HPE 또는 “고객”에게 공급일자 전으로 발행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HPE의 “제품” 또는 “용역”의 인수 전에 청구서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공급자”는 “계약”에 따라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HPE에게 대금을 청구해야 한다. “공급자”는 최초 대금 청구 요건 충족일로부터 백팔십(180)일 이후에는 청구서 또는 청구서에 대한 수정 요청을 제출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청구서 적시 제출 요건은 HPE의 대금 지급 의무의 전제 조건이 된다. 각 청구서는 “발주서”에서 정한 주소 또는 전자 청구서 적용 시 HPE가 정한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 2.4 지급 조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구래의 경우, 동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대금 지급 조건이 조건이 적용된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거래의 경우 “제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HPE에게 청구할 모든 청구서는 매월 29일에서 다음 달 28일(이하 “누적 기간”) 사이에 발생분을 모아서 청구해야 한다. HPE는 “누적 기간” 동안 모아진 청구서에 대한 대금을 “누적 기간” 종료 후 육십오(65)일에 가장 가까운 월의 첫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즉시 대금지급 할인은 HPE가 대금지급 조건이 충족된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금은 대한민국 원화로 지급한다. 대금 지급 사실은 “제품” 또는 “용역”의 인수로 간주되거나 HPE의 검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수는 HPE가 “제품” 또는 “용역”이 인수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때 이뤄진다(이하 “인수”). HPE는 “공급자”가 HPE에 부담하는 채무 등을 “공급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 2.5 청구서 필수 요건. HPE 담당자에 대한 청구서 전송 방법과 무관하게 청구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i) 공급자명 및 청구 일자, (ii) “발주서” 번호, (iii) 실제 공급되거나 수행한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한 일련번호(해당할 경우), 가격, 그리고 수량을 포함한 설명, (iv) 크레딧(해당할 경우), (v) 공급자 담당자 성명(적용될 경우), 직책,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vi) HPE가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또는 정보, 그리고 (vii) 세금 공제 등에 필요한 양식. 공급자는 청구서에 과세, 비과세, 세금의 종류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 2.6 실비 지급. HPE는 공급자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실비 부담한 비용이 합리적이고, HPE가 사전에 이를 서면으로 승인했고, 실제 비용 발생일로부터 육십(60)일 내에 개별 목록을 청구서에 표시하여 청구한 비용에 한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 2.7 전자 청구서.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공급자”는 HPE의 요청에 따라 “공급자”의 비용으로 HPE가 지정 전자적 포맷으로 HPE에게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전자 청구서 발행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공급자”는 상기 절차 이용 시 HPE와 “공급자” 간의 거래 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한다. “공급자”가 HPE의 요청 이후 합리적인 기간(구십(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내 전자 청구서 발행 절차를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 HPE는 “공급자”가 청구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기 전까지 비전자적으로 방식으로 제공된 청구서에 대한 대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3 공급 및 인수 조건

- 3.1 재판매자 증명서. 적용 가능한 경우, “판매 목적” 목적으로 HPE가 발행하는 발주서에는 재판매 증명서 번호를 표시하도록 한다.
- 3.2 발주서 요건. “공급자”는 HPE로부터 서면 발주서의 수령 또는 발생 비용에 대한 서면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제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거나 관련 비용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공급자”는 HPE 발주서 수령 전 개시 또는 발생한 “용역” 또는 비용에 대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를 HPE에 청구할 수 없다.

- 3.3 변경. HPE는 공급되지 않은 “용역”이나 “산출물”에 대한 SOW 변경을 “공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경이 공급 가격이나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공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정 사항을 지체 없이 HPE에게 통지하고 양 당사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금 변경 사항을 협의하고 이를 SOW를 반영 하도록 한다. HPE가 승인하지 않은 SOW 변경에 대해서 HPE는 “공급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 3.4 소유권 및 위험부담. HPE나 “고객”에 대한 “공급자”의 공급 조건은 DDP(Delivered Duty Paid)로 한다.

4 제공 권리 - 라이선스 제품

- 4.1 “제품” 또는 “용역”에 소프트웨어, 펌웨어 또는 문서가 포함될 경우, “공급자”는 HPE에게 문서의 사용, 복제, 전시, 2차 저작물 제작 및 이러한 저작물, 소프트웨어, 펌웨어, 또는 문서를 직접 또는 HPE 제품 내 통합된 형태로 배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를 제3자에게 재실시할 수 있는 비독점적, 영구적, 무상의 전세계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제3자 라이선스 요구 조건. “공급자”는 모든 필요한 라이선스를 파악하고 “제품”에 포함된 제3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HPE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급자”는 소스 제공 요건이 있는 라이선스에(GNU; General Public Licenses 등) 따라 실시된 모든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HPE에게 제공한다. 소스 코드가 “공급자”가 이전에 제공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공급자”는 HPE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칠(7) 일 이내에 소스 제공 요건의 적용을 받는 오픈 라이선스에 따라 실시된 모든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한다. “공급자”는 HPE에게 필요에 따라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5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5.1 “공급자”는 HPE “공급자 포털”(HPE Supplier Portal; https://h20168.www2.hp.com/supplierextranet/Data_Security_and_Privacy.do)에 등재된 현재 “데이터 네트워크 보안 지침” 및 “개인정보 보호 지침”(Data Network Security Schedule & Privacy Schedule)에 따라 “HPE 데이터”, “용역”, 그리고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HPE는 “공급자 포털” 및 당해 포털에서

언급한 모든 웹사이트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본 문서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데이터 네트워크 보안 지침” 또는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에 따른다.

- 5.2 “공급자”가 “HPE 제품” 내 통합된 “HPE 제품”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자”는 HPE “공급자 포털”에 공시된 HPE의 “공급자 준법 요구조건”도 준수해야 한다(<https://h20168.www2.hp.com/supplierextranet/index.do>).
- 5.3 “공급자”는 오로지 본 “계약”이나 SOW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해 HPE의 요청에 따라 “용역”, 소프트웨어 또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와 방법에 따라서 “HPE 데이터”를 수집, 저장, 전송, 공유, 열람, 접근 기타 처리(이하 “처리”)하고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한다. 이와 다른 목적을 위한 “공급자”에 의한 또는 “공급자”를 위한 “HPE 정보 시스템”에 접속이나 “HPE 데이터”의 처리는 “공급자”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본다. “공급자”는 HPE가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은 이상 “HPE 데이터”, “HPE 정보 시스템” 또는 “제품”을 매매, 임대, 전송, 배포, 공개, 복사, 수정 또는 제거할 수 없다. “공급자”는 모든 “HPE 데이터”의 처리와 “용역” 제공이 모든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임을 보장 한다. “공급자”가 그러한 “관련 법령”과 본 조건에 따라 “HPE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용역” 또는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이 사실을 HPE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5.4 “공급자”는 “HPE 데이터”를 보안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ISO 27001/2와 같은 업계 표준 정보 보안 보호 장치를 포함해 포괄적인 정보 보안 정책을 개발, 도입 및 유지해야 한다.
- 5.5 “공급자”는 “데이터 네트워크 보안 지침” 및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보안 침해 통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6 기밀 정보

HPE 기밀 정보. “기밀 정보”란 다음에 공개된 정보 또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i) 공개시점에 HPE 자산 또는 기밀로 표시된 정보나 데이터, (ii) HPE나 “고객”의 제품(그에 대한 발견, 발명, 연구, 개선, 계획, 로드맵, 개발, 생산 또는 판매 포함), 공정, 또는 일반적인 경영 활동(판매 비용, 수익, 가격 정책, 조직, 그리고 임직원 목록 포함)에 관한 또는 그와 관련된 정보나 데이터, 그리고 어떠한 “HPE 정보 시스템”, HPE 또는 “고객”의 기술 데이터, HPE 또는 “고객”의 고객, “계약”, “계약”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 모든 가격 정보에 접근하여 취득된 모든 정보나 데이터, (iii) “고객”이 제공한 정보이거나 그와 관련된 정보나 데이터; 또는 (iv) 구두로 공개되었을 경우, 공개 당시 HPE 자산 또는 기밀임을 알렸고 공개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제공된 서면 요약본에서 HPE 자산 또는 기밀이라고

표시한 정보나 데이터.

- 6.1 HPE “기밀 정보” 의무. “공급자”는 “기밀 정보”의 승인되지 않은 사용, 배포, 공개 또는 출판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 정보”를 보호할 것이고, “공급자”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보호하도록 할 것이다. “공급자”는 “기밀 정보”를 알 필요성이 있고 최소한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엄격한 기밀유지 의무 조건 하에서 “공급자”의 “임직원”에게만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한 “기밀 정보”의 수령인에게는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를 알려야 한다. “기밀 정보”는 “계약”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공급자”나 그의 “계열사”가 법원 명령 또는 유사한 절차나 적용되는 정부 절차에 따라 “기밀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 받은 경우, “공급자”는 그러한 정보 공개 요청이나 의무의 이행 전에 이를 지체 없이 HPE에게 알려야 하며, HPE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절한 “기밀 정보” 보호 명령을 구하거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밀 정보”와 관련된 의무는 “계약” 해지와 무관하게 영구적으로 존속한다.
- 6.2 “공급자 기밀정보”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상호 합의된 가격을 말한다. “공급자”의 동의 없이는 “공급자 기밀정보”를 어떠한 제3자에게도 (HPE를 대신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대리인이나 하도급업체 제외) 공개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공급자 기밀정보”의 유지 기한은 본 “계약”(또는 그에 대한 갱신 계약)의 만료나 중도 해지일로부터 이(2) 년으로 한다.
- 6.3 예외. 위 기밀유지 의무는 (a) 공개 당사자의 정보 공개 이전에 이미 수신자가 알고 있었거나; (b) 대중에게 알려져 있거나 수신자의 귀책 없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거나; (c) 수신자가 기밀유지 의무 없이 정당하게 제3자로부터 얻은 정보이거나; (d) 수신자가 독립적으로 개발하거나; (e) 법령 상의 이유로 공개되거나; 또는 (f) 공개자의 사전 서면 동의에 따라 수신자가 공개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6.4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 HPE 또는 “고객”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속은, “제품” 또는 “산출물”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전 허용을 받아야 가능하며, HPE와 “공급자” 간의 합의된 범위 내의 HPE 또는 “고객”의 “정보 시스템”, 접속 장소, 시간, 그리고 인원 제한하여 허용한다. HPE나 “고객”은 각자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속 전에 “공급자”의 직원, “하도급자” 또는 대리인에게 개별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HPE 또는 “고객”의 “정보 시스템” 접속은 HPE 또는 “고객”의 사업 통제 및 정보 보호 정책, 기준, 그리고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공급자”는 HPE가 접속을 위해 승인한 특정 장소에서만 “정보 시스템”에 접속할 것에 동의한다. HPE 또는 “고객”의 사업장 밖에서의 접속의 경우에는 HPE가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할 특정한 네트워크 연결 방식을 지정하도록

한다.

7 책임 제한

- 7.1 아래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HPE는 다른 상대방에 대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어떠한 특별, 간접, 또는 부수적 손해(데이터 망실, 매출 또는 매출의 상실, 자본 비용 또는 휴업 비용 포함) 또는 예시적이나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원칙은 그와 같은 손해의 발생 원인이 불법행위, 보증, 계약 기타 법적 이론 또는 그러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전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 7.2 아래에서 추가로 정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본 “계약”의 이행 또는 본 “계약”의 목적 또는 조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 당사자의 다른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a) 미화 \$2,000,000.00(이백만 달러) 또는 (b) 관련 문제의 발생 원인이 되는 부분에 “지급할 계약 대금”의 다섯(5) 배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본 항의 “지급할 계약 대금”이란 i) 지급되었거나, ii) 지급되어야 할, 또는 “공급자”가 본 “계약”에 따른 그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을 경우 지급 해야 하는 계약대금을 의미한다.
- 7.3 위 조건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정한 “공급자”의 면책, 기밀정보,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관련 책임 또는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다른 당사자에 대한 상해, 사망 또는 재물에 대한 물리적인 손상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분쟁에는 손해배상책임 제한 조건이 적용 되지 않는다. 또한 공급자에 책임 있는 사유로 HPE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본 조에 정한 책임 제한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8 면책

- 8.1 면책, “공급자”는 “분쟁”이 다음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HPE, 그의 “고객” 및 “승인된 사용자”를 모든 제3자 분쟁에 따른 손실, 제한, 요구조건, 변호사 비용, 손해배상금, 채무, 비용, 경비, 분쟁 원인, 또는 소송(통칭하여 “분쟁”)으로부터 방어, 면책, 보호 그리고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다. 본 항의 “분쟁”은 (i) “공급자” 또는 그 “임직원”의 과실 있는 작위나 부작위 또는 고의적인 불법행위; (ii) “공급자”나 그 “임직원”에 의한 본 “계약”의 위반; (iii) “공급자” 또는 그 “임직원”에 의한 재산적 손실, 손해, 상해 또는 사망, 또는 (iv) 본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공급한 제품 또는 용역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분쟁”을 의미한다.
- 8.2 법원이 “분쟁”이 HPE의 과실, 부주의, 또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법원의 판단한 HPE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공급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 8.3 HPE는 HPE가 “공급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포맷으로 제공한 정보나 자료(이하 “HPE 콘텐츠”)에 의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과 관련한 제3자 분쟁이나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 소송 책임, 손해, 비용 그리고 경비(합리적 변호사 비용 포함)로부터 “공급자”를 방어, 면책 및 피해가 없도록 한다. 단, “공급자”는 그러한 “HPE 콘텐츠”를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했어야 하며 “공급자”가 “HPE 콘텐츠”를 그러한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 8.4 HPE의 위 방어 및 면책 의무는 침해 주장이 (a) “HPE 콘텐츠”에 대한 HPE나 그 대리인 또는 하도급업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명시적 승인 없는 수정, 변경, 또는 정정; (c) “공급자”가 본 “계약” 또는 SOW를 위반한 “HPE 콘텐츠”의 사용; 또는 (d) “공급자”가 HPE의 별도 승인 없이 “HPE 콘텐츠”를 HPE가 소유, 지정, 개발 또는 제공하지 않은 제품이나 정보와 결합한 사용한 경우는 위 8.3항에 정한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8.5 가처분 조치. “라이선스 제품”, “산출물” 또는 그 일부의 독자적인 사용 또는 다른 장비, 소프트웨어, 방법 또는 서비스와 결합한 사용이 금지될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과 재량으로: (i) “라이선스 제품” 또는 “산출물”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HPE 및 “고객”을 위하여 확보하거나; (ii) “라이선스 제품” 또는 “산출물”을 동등한 기능과 성능을 갖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없는 물품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iii) 기능이나 성능 저하 없이 “라이선스 제품” 또는 “산출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수정해야 한다. 위 구제 방안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는 다른 적용 가능한 구제 조치에 더해 사용 금지된 “라이선스 제품” 또는 “산출물”에 대해 지급된 모든 대금을 지체 없이 HPE에게 반환하고, 그러한 금지 명령으로 인해 HPE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 8.6 예외.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HPE가 “라이선스 제품” 또는 “산출물”을 승인 없이 수정하거나 “공급자”나 HPE가 제공하지 않은 장비,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와 결합한 “라이선스 제품” 또는 “산출물”의 사용으로 인한 “분쟁”에 대해서는 “공급자”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단, 본 예외 조건은 지식재산권 “분쟁”이 라이선스 제품 또는 산출물을 수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다른 제품 결합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되며, “라이선스 제품” 또는 “산출물”의 성격, 본 “계약”에 대한 SOW, “소프트웨어 부록”, 또는 “공급자”의 사양, 서면 디자인 또는 문서 상 문제가 된 결합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어야 한다.
- 8.7 통지. HPE는 “분쟁” 발생 시 이를 공급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한다. “공급자”가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분쟁”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경우, HPE는 (“공급자”의 비용으로) 방어를 위해 필요한 권한, 정보, 그리고 합리적 지원을 제공한다. “공급자”가 그러한 “분쟁”의 방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방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임에 대한 합리적인 확약을 HPE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HPE는 HPE가 보유한 다른 권리나 구제 수단을 제한 함이 없이 “분쟁”을 직접 방어하고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공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공급자”가 분쟁과 관련하여 화해나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HPE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HPE와 다른 면책 대상 주체 들은 각자의 판단으로 관련 “분쟁” 방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9 해지

- 9.1 이유 있는 해지. 일방 당사자가 (i) “SOW” 또는 “발주서”의 조건 또는 (ii) “SOW” 또는 “발주서”와 관련하여 본 “계약”의 조건을 위반하고, 그에 대한 시정요청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삼십(30)일 또는 “프라임 계약”에서 정한 계약위반 치유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내 위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SOW” 또는 “발주서”를 해지할 수 있다.
- 9.2 임의 해지. HPE는 “공급자”에게 십사(14)일 전 사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공급자에 대한 책임 없이 SOW 또는 발주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본 계약에 따른 거래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 대상인 경우,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 9.3 해지의 효과 - “용역”. “SOW” 또는 “발주서”의 해지 시, “공급자”는 즉시 HPE에게 해지 일자까지 완성되거나 진행 중인 모든 작업물을 제공해야 한다. HPE는 “SOW” 또는 “발주서” 해지 시 “공급자”가 부분적으로 완성한 작업물에 대해 HPE가 판단하는 공정한 금액을 해지 일자 이전에 지급하고, 완성된 “용역” 또는 “산출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합의된 가격을 지급하기로 한다. 본 항에 조건은 HPE가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해지와 관련한 HPE의 책임의 전부이다.
- 9.4 자료의 반환. “계약”의 해지 또는 SOW에 따른 “공급자”의 업무 완료 시 (둘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 적용), “공급자”는 HPE 또는 “고객”이 “계약”에 따라 제공한 모든 자료 또는 도구와 HPE 또는 “고객”이 “공급자”에게 제공한 모든 “기밀정보”를 지체 없이 HPE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10 수출 및 수입 법규 준수

- 10.1 HPE 와 “공급자”는 본 “계약”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미국과 다른 국가의 수출, 수입 및 무역 관련 법령과 규제를 준수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공급자”는 다음의 사항을 보증한다: (i) “공급자”는 필요할 경우 HPE 의 요청에 따라 본 “계약”에서 규율 하는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HPE 가 이러한 항목의 적용 규제에 따른 수출 및 수입 분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항목에 대한 기술 사양을 제공할 것이며; (ii) “공급자”가 아는 한도 내에서 “공급자”는 미국 정부의 국제 무역 제재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목록에 등재될 경우 이를 즉시 HPE 에게 통지할 것이며; 그리고 (iii) “공급자”는 미국 수출관리규정(U.S.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https://www.bis.doc.gov/index.php/regulations/export-administration-regulations-ear>)

참조) 제 740 장 Supplement 1 에 명시되어 있는 분류에 따른 D:1, E:1 및 E:2 그룹 국가에 대해 제한된 제품, 소프트웨어, 기술, 기술 데이터 또는 기술 지원을 공개, 전송, 또는 수출하기에 앞서: (i) “공급자”는 필요한 모든 미국 정부 승인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ii) 그러한 제한된 소프트웨어, 기술, 기술 데이터 또는 기술 지원의 HPE 에 의해 제공될 경우, “공급자”는 HPE 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iii) “공급자”는 기록상 수출자가 되고 미국 수출 및 재수출 법규를 포함한 모든 적용 수출 법규를 준수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동의한다.

11 프로젝트 sow 조건

- 11.1 고객 계약. HPE와 “고객”간에 체결한 “프라임 계약” 내용 중 “공급자”의 “용역” 또는 “산출물”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조건 (“플로운 다운 조건”)은 자동으로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것에 “공급자”는 동의한다. “플로우 다운 조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sow에서 정하기로 한다.
- 11.2 허가, 면허 및 검사. “공급자”는 “산출물”의 작성 및 완성에 필요한 모든 면허, 허가 그리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HPE의 요청에 따라 “공급자”는 모든 허가, 서면 승인, 면허, 그리고 검사를 이행 후 이행 완료를 확인하는 문서의 사본을 HPE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 11.3 “공급자” 증명서 및 교육. “공급자”는 “임직원”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히 교육 받았으며,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 또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약한다.
- 11.4 일정에 따른 수행.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용역” 또는 “산출물” 관련 업무는 “계약” 또는 “SOW”등 계약 문서에 정한 일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이행해야 한다.
- 11.5 “공급자” 자료 및 설비. HPE, “고객” 또는 다른 지정된 제3자가 제공하기로 정하지 않는 한, “공급자”는 sow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 제공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문서, 소프트웨어, 장비, 도구, 설계도 또는 도면, 또는 기타 자료 등 필요 자원 및 설비를 보유해야 한다. HPE는 sow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어떠한 자료, 설비나 시설을 “공급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11.6 위험 물질. “용역” 제공 과정에서 위험 물질에 대한 사용, 취급, 유지, 제거, 수송, 기타 유사한 행위가 관련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공급자”는 모든 위험 물질을 업계 표준 및 관행에 따라, 그리고 모든 관련 법령, 규칙, 또는 규제에 따라 안전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위험 물질과 관련해 필요한 모든 면허나 허가의 확보 및 유지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 11.7 “공급자 임직원”. 모든 “공급자 임직원”은 “공급자”의 지시, 감독 및 지휘 하에 있다. “공급자 임직원”이 HPE 에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공급자 임직원”의 행위 및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공급자”는 그의 임직원에 대해 엄격한 규율과 질서로 관리할 것이며, 모든 “공급자 임직원”이 본 “계약”의 모든 관련 조건을 준수할 것임을 보장한다. “공급자”는 각 “공급자 임직원”에게 할당되는 작업에 적합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한다. “공급자 임직원”은 HPE 가 고용주가 아님을 확인하며, “공급자 임직원”에 대한 보상 책임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하고, 직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모든 세금, 기여금, 그리고 수당 (산재보상금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등의 지급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HPE는 “공급자”의 보상, 수당 또는 납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공급자”나 그의 “임직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공급자”는 그러한 납세, 기여금, 그리고 수당에 대해 HPE를 면책, 방어 및 피해가 없도록 하며, 필요한 모든 신고 및 환급의 신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정부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 11.8 “하도급자”. “공급자”는 HPE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용역” 또는 “산출물” 관련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공급자”는 안전, 보안, 기밀유지, “개인정보”, 보험과 보험증서, 면책, HPE의 “접근성 요건”, HPE의 “임시 근로자 행동강령”과 HPE의 “사회적 및 환경상 책임 정책”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 따라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의무를 그의 “하도급자”에게 부과하기로 한다. “공급자”는 그의 “임직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한다. 하도급된 용역에 대한 보상은 “계약” 제2조(재무 조건)에 따라 “공급자”가 청구하는 요금 및 비용에 포함된다.

- 11.9 신원 조사.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자”는 해당 “공급자 임직원”의 형사 신원 조사 결과 “현장” 참여일로부터 12개월 내 범죄기록이 없는 자로 투입해야 한다. 이는 정기적인 검사 요건으로 각 “공급자 임직원”은 이러한 형사 신원 조사를 매년 받고 통과해야 한다. 형사 신원 조사는 다음의 기간 동안 해당 “공급자 임직원”이 거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국가를 포함해야 한다: (i) 과거 7년(법에서 제한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보다 짧은 기간)의 중범죄 및 경범죄 기록에 대한 형사 신원 조사; (ii) “해당 개인”의 지정 업무에 운전이 포함된 경우 과거 3년(법에서 제한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보다 짧은 기간)의 운전 기록 조회. “관련 법령”에서 달리 금하고 있지 않는 한 다음의 범죄로 유죄를 받은 “임직원”은 어떠한 “현장”에서도 근무할 수 없다: 개인에 대한 범죄; 무기, 폭발물 또는 방화와 관련된 범죄; 컴퓨터/네트워크의 이용/오용과 관련된 범죄; 영업기밀/독점적 정보의 도난, 절도, 도난, 횡령, 부패, 뇌물, 위조, 사기, 작물의 수령과 관련된 범죄; 또는 불법적 약품이나 규제 약품의 소유,

제조, 운송 또는 매매와 관련된 범죄.

11.10 근로 기록. 과거 근로 기간 중 HPE 또는 “고객”의 영업장 내에서의 비위행위로 면직된 기록이 있는 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공급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HPE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러한 자로 하여금 SOW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 SOW를 수행하는 “공급자 임직원”이 업무 투입일 전 12개월 내 HPE 정규직 근로자였던 경우, “공급자”는 해당 “공급자 임직원”을 SOW 업무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11.11 기간제 근로자 행동강령. “공급자”는 다음 주소에서 제공되는 HPE의 기간제 근로자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https://h20195.www2.hp.com/v2/getdocument.aspx?docname=c04797632>

11.12 사회적 및 환경 책임. “공급자”는 HPE의 “공급망 사회적 및 환경 책임 정책”과 그에 포함된 관리 체계의 확립 및 다음 주소에서 제공되는 HPE의 “전자 산업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https://h20195.www2.hp.com/V2/GetDocument.aspx?docname=A00029574ENW>

12 고객 응대

12.1 고객 접촉. “공급자”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용역” 또는 “산출물”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고객”과 직접 연락할 수 있다.

12.2 신규 및 후속 영업. “공급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후속 프로젝트 수주 기회 또는 “용역”과 명확히 연관된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알게 될 경우, “공급자”는 이러한 정보를 HPE에게 공개해야 한다.

12.3 “공급자”의 판매 활동. “공급자”는 “고객”과의 직접적인 사업 활동을 유지 또는 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임직원”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해당 “공급자 임직원”은 HPE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고객”에게 장래의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3 보증

13.1 “용역 보증”. “공급자”는 다음의 사항을 보증한다: (i) “공급자”가 제공하는 모든 “용역”은 전문가다운 방식으로, “공급자” 업계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수행되는 유사한 범위와 난이도의 프로젝트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사용하는 기술과 주의 기준에 따라, 그리고 본 “계약”의 요건을 준수하며 이뤄질 것이고; (ii) “공급자”는 “계약”의 조건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데 충분한 경험이 있고, 적절한 자격, 허가, 장비, 조직, 그리고 재무적 역량을 갖추고 있고; (iii) “공급자”는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이해 충돌을 발생시키거나 그러한 “용역”의

제공과 모순되거나 그를 어떠한 식으로든 제한하는 의무나 제약을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iv) HPE에게 제공되는 모든 자료 및 장비(제공될 경우),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술은 “용역”의 완성 후 십이(12) 개월 동안 “계약”의 요건을 준수하고 오류, 결함, 그리고 하자가 없을 것임을 보증한다. 계획이나 사양, 또는 하도급계약조건에 따라 특정 자료, 장비 또는 기술에 대해, 또는 설치된 제조 구성 단위와 관련하여 더 장기의 보증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더 긴 보증 기간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공급자”는 다른 제조사 보증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자료와 장비는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HPE가 보증대상자로 제조사에 등록이 되도록 해야 한다.

13.2 HPE “접근성 요건”. “공급자”는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라이선스 제품”, “용역” 또는 “산출물”이 “관련 법령”과 Rehabilitation Act(36 C.F.R. § 1194) 제508조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정보 접근성 기준(“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및 기타 다음 링크 상의 HPE “접근성 요건”에서 포함된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접근성 기준 및 규제를 가능한 최대한으로 준수함을 보증한다: <https://www.hpe.com/us/en/about/accessibility-aging.html>

13.3 위반에 대한 구제.

(a) 제13.1조(“용역 보증”) 및 제13.2조(HPE “접근성 요건”)에 대한 위반의 경우, HPE는 제9조(해지)에 정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또는 HPE 또는 “고객”이 하자가 있거나 조건 미준수로 보는 부분을 “공급자”가 HPE나 “고객” 비용 부담 없이 재이행 하도록 할 수 있다.

14 지식재산권

14.1 보유 권리. 각 당사자는 “기존 지식재산”의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 갖는 “기존 지식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그리고 관련 이권을 계속하여 보유한다(본 계약서에 포함된 라이선스 부여조건은 유효함).

14.2 “기존 지식재산”.

(a) “공급자”는 “공급자”나 제3자의 “기존 지식재산”을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공급자”가 관련 “기존 지식재산”의 보유자가 아닐 경우 “공급자”는 “공급자”의 “계약” 준수를 및 HPE의 “프라임 계약” 준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권리를 해당 권리의 원보유자로부터 확보해야 한다.

(b) “산출물”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 지식재산”에 대해 “공급자”는 HPE에게 관련된 “공급자” 또는 제3자 “기존 지식재산”에 대한 비독점적, 무상의 전세계적이고 영구적이며 철회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제공하며, 이러한 라이선스에는 해당 지식재산을 공개할 권리와 해당 지식재산을 제작, 판매, 사용, 복제, 수정, 조정, 전시, 배포, 또는 제작하게 하거나 지식재산의 다른 버전을 제작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타인이 하게끔 재 실시 할 권리가 포함된다.

(c) (i) “공급자”가 SOW에 “산출물”에 포함될 제3자 자료의 구체적인 요소를 특정하고, (ii) “공급자”가 SOW에서 이에 대응하는 제3자 라이선스의 범위 및 사용 제한을 명시하고, (iii) HPE가 SOW 를 통해 승인하고 (또는 다른 서면 계약 통한 승인), 그리고 (iv) “오픈 소스” 자료의 경우 HPE의 “오픈 소스” 검토 절차에 따른 승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공급자는 “오픈 소스” 또는 프리웨어를 포함한 제3자의 자료를 “산출물”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공급자”는 “공급자” 자신이 공급하는 모든 “산출물”이나 다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소프트웨어 요소와 관련해 제3자 라이선스(오픈 소스 라이선스 포함)를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준수할 것임을 진술 및 보증한다. “공급자”는 “공급자”가 제3자 라이선스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HPE나 HPE의 “고객”이 입는 모든 손실이나 책임으로부터 HPE를 면책 시켜야 한다.

14.3 “산출물에 대한 권한”. “기존 지식재산”에 대한 “공급자” 및 제3자의 기존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모든 “산출물” 및 그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HPE에게 귀속하며, “공급자”는 이에 따라 그러한 권리를 HPE에게 양도한다. “공급자”는 HPE가 “산출물”에 대한 모든 특허, 발명 증서, 실용신안이나 다른 권리, 저작권 또는 영업기밀권을 보유하며 “공급자”에 의한 추가 보상금 청구나 “공급자”에 의한 반대나 방해 없이 “산출물”을 사용할 완전한 권리를 갖는 것에 동의한다. “공급자”는 HPE의 비용으로 HPE가 어떠한 국가에서도 “산출물”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또는 다른 권리를 확보, 유지, 그리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문서에 서명하고 그 외 필요한 방식으로 HPE를 지원해야 한다. “공급자”, 그 대리인, 직원, 그리고 “하도급자”는 “계약”의 만료/해지 또는 HPE의 요청 중 더 빨리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물”을 HPE에게 제공해야 한다.

15 보험

15.1 SOW의 이행 중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산업재해 및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요구되는 다른 의무 보험을 완전하고 유효하게 유지할 것임을 진술 및 보증한다. SOW나 다른 계약 서류에서 명시된 경우, “공급자”는 “계약” 및 관련 SOW에 따른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 보증 또는 다른 적절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16 “현장” 보안 및 안전

16.1 보안 요건. “공급자”의 “임직원”은 HPE 또는 “고객”의 “현장” 보안 및 안전 규정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HPE의 “프로젝트 관리자”가 전달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공급자”에게 제공할

것이다.

17 일반 조항

- 17.1 **부패방지법.** HPE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이하 “FCPA”), 영국 뇌물수수법(US Bribery Act; 이하 “UKBA”) 및 다른 국가의 부패방지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법령은 HPE나 그 “계열사”가 영리활동 단체나 외국 정부의 공무원, 정당, 정당 소속 의원, 또는 공직 후보자에게 그의 공식적인 지위에 따른 행위나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외국 정부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HPE나 그 “계열사”가 다른 이와외의 거래를 획득, 유지 또는 유도하거나, 부적절한 사업적인 이익을 확보하는데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직, 간접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공급자”는 HPE가 FCPA, UKBA 또는 달리 적용되는 부패방지 법령 또는 규제를 위반하게 만드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공급자”는 그러한 위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HPE에게 알리고 그러한 위반으로 인해 HPE가 입거나 HPE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 벌금, 또는 불이익에 대해 HPE를 면책 시켜야 한다. 위 의무 위반 시 HPE는 다른 사전 통지나 책임 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 17.2 **독립적 계약자.** “공급자”는 오로지 독립적인 계약자로만 행위 할 것이다. 본 계약서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양 사간에 위임관계, 고용관계, 파트너관계 또는 합작 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17.3 **양도.** “계약”의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제17.3조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바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의 작용에 따라 또는 다른 방식으로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전 서면 동의 없는 양도, 이전, 또는 위임 행위는 모두 무효이고 집행할 수 없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HPE 또는 HPE의 승인된 양수인은 (1) HPE의 지배 또는 공동으로 지배하에 있는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양수인 또는 (2) HPE나 그 허용된 후속 양수인 또는 수임인의 지배나 소유권 변동, 합병, 재편, 사업양도,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또는 사업 부분의 분할 또는 HPE에 대한 지배권의 변화 또는 HPE의 승인의 양수인에 대해서는 “공급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서를 양도할 수 있다. 본 “계약” 기간 도중 HPE가 그의 자산이나 사업부분의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그 결과로 분할된 주체 또는 승계인은 본 계약에 따라 HPE가 향유하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권리에 HPE와 동일한 할인률 및 HPE와 분할기업의 주문량을 통합하여 주문량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 받는 것을 권리를 포함한다. 상기 내용에 제한 없이 본 “계약”은 양 당사자 및 그의 허용된 양수인에게도 계속하여 적용된다.
- 17.4 **준거법.** 본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 된다. “공급자”와 HPE는 본 “계약”이나

- 그에 따라 처리되는 거래에 대해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다.
- 17.5 “관련 법령”의 준수. “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모든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임을 보증한다. HPE는 “공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덧붙여 본 계약에 따른 거래가 대한민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경우, HPE와 공급자는 이를 준수하여 거래해야 한다.
- 17.6 비제한적 관계.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HPE나 그의 “계열사”가 “용역” 또는 “산출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사한 제품이나 용역을 독자적으로 개발, 취득, 홍보 또는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 17.7 통지. 본 “계약”에 따른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sow 상 각 당사자의 주소로 발송해야 한다. 통지의 방식은 직접 전달, 빠른 등기, 또는 선불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시점에 통지 수령 된 것으로 간주된다: (i) 직접 전달 시 - 전달 시점; (ii) 빠른 등기 시 - 배달원에게 전달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iii) 선불 우편 사용 시 - 발송 일자로부터 삼(3) 영업일.
- 17.8 정보공개. “공급자”는 “계약”의 존재나 그 조건을 대외 공개 또는 홍보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HPE나 그 “계열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i) HPE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ii) “공급자”의 “계약” 의무 이행에 필요한 경우; 또는 iii) 법령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경우. HPE는 정보공개 동意的 조건으로 HPE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제약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위 제(ii)항 또는 제(iii)항에 따른 공개 시에는 “공급자”는 HPE에게 공개로부터 10일 전에 서면 통지 해야 한다.
- 17.9 포기. 각 당사자의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의 불이행 또는 집행 지연은 당해 권리를 포기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계약”의 위반에 대한 책임 면제를 장래의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면제를 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모든 권리 포기는 서면으로 각 당사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 17.10 가분성. “계약”의 특정 조건이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효력이나 집행 가능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은 원래의 “계약” 체결 의도를 가장 가깝게 반영하는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대체 조항을 협의하거나 그러한 조항이 추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한 조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 17.11 존속 조항. 다음의 조항은 “계약”의 해지나 만료 시 존속한다: 제4조(제공 권리 - 라이선스 제품), 제5조(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6조(기밀 정보), 제7조(책임의 제한), 제8조(면책),

제10조(수출 및 수입 법규 준수), 제13조(보증), 제14조(지식재산권), 제15조(보험), 제17조(일반 조항), 그리고 이러한 조건과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고객” “플로우다운”, 문구나 맥락에 따라 존속이 암시되는 모든 조항, 그리고 HPE에게 부여되는 “산출물”에 대한 모든 라이선스.

- 17.12 완전한 합의. 본 “계약”은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구두 또는 서면의 모든 기존 또는 동시에 존재하는 이해, 합의, 그리고 진술에 우선하는 효과를 갖는다. “계약”에 대한 보충, 수정, 또는 개정은 서면으로 그것이 “계약”에 대한 개정임을 명시하고 “계약”을 개정할 권리가 있는 각 당사자의 대표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한 구속력이 없다. “계약”의 목적상 “라이선스 제품”에 동반되는 클릭랩(click-wrap), 쉬링크랩(shrink-wrap) 기타 유사한 조건은 명시적으로 상기의 “서면”에서 제외한다.

18 정의

- 18.1 “계열사”는 특정 기업과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a) 당해 기업을 지배하거나; (b) 당해 기업의 지배를 받거나; 또는 (c) 당해 기업과 공통의 지배 하에 있는 다른 기업 또는 법인격 있는 단체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지배란 과반수 지분 또는 당사자에게 해당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부여할 수 있는 최소 지분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소유를 통해 법적으로 인식 가능한 주체의 경영과 정책을 정하거나 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특정 법인에 대해 이러한 지배가 존속하는 동안에만 해당 법인을 “계열사”로 본다.
- 18.2 “관련 법령”이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적용되는 모든 내국, 국제, 외국 및 지방 법령 등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요건을 의미한다.
- 18.3 “승인된 사용자”란 HPE와 그 계열사 그리고 그들의 Joint Venture, 직원, 대리인, 컨설턴트, 하도급업체를 의미한다.
- 18.4 “고객”이란 HPE가 그에 대해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하기로 한 HPE 고객을 의미한다.
- 18.5 “일”이란 역일(曆日)을 의미한다.
- 18.6 “산출물”이란 “공급자”가 SOW에 정한 의무 달성을 위해 위해 HPE 또는 “고객”에게 공급하는 유형의 물품을 의미한다.
- 18.7 “DDP(Delivered Duty Paid)”란 (i) “공급자”가 “라이선스 제품”을 HPE에 수입이 허가된 상태로 공급하고; (ii) “공급자”가 운송 중인 “라이선스 제품”을 소유하고; (iii) 소유권 및 위험부담은 “발주서”에서 정한 목적지에서 “라이선스 제품”이 공급될 때 HPE에게 이전하며; (iv) “라이선스

- 제품”을 “발주서”에서 정한 목적지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화물, 운송, 부담금, 그리고 세금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하고; (v) “공급자”가 “라이선스 제품”을 보존, 포장, 취급 또는 포장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는 “공급자”가 부담하고; 그리고 (vi) 위험 부담이 HPE에게 이전될 때까지 모든 “라이선스 제품”에 대한 보험을 들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함을 의미한다.
- 18.8 “HPE”는 “계약” 전체에 걸쳐(제2조(재무 조건) 제외) HPE 본사와 그 “계열사”를 의미한다. 제2조(재무 조건)에서의 “HPE”는 “발주서”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HPE 계열사를 의미한다.
- 18.9 “정보 시스템”이란 넷-서비스,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통신 시스템 및 기타 정보 시스템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 정보 시스템; 그리고 암호, 토큰, 키, 로그온 스크립트(logon script), 또는 다른 인증 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접속 방식을 의미한다.
- 18.10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이란 특허, 저작권, 저작인격권, 영업기밀, 마스크워크, 상표, 영업 표장, 그리고 다른 지식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 18.11 “내부 용도”란 시스템 대체 작동 또는 자택, 원격, 이동 또는 부수적 사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 내부적인 정보 처리 서비스 및 컴퓨터 사용 목적에 따른 HPE 및 모든 “승인된 사용자”에 전세계에서의 사용을 의미한다.
- 18.12 “라이선스 기간”이란 “소프트웨어 부록문서”에서 명시된 효력일자로부터 시작되는 영구적 또는 고정 기간을 의미한다.
- 18.13 “라이선스 제품”이란 “공급자”가 HPE에게 제공하거나 “계약”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부록문서”에 열거되고 설명된 목적 코드로만 된 “공급자”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모든 제공 되는 버전, 플랫폼, 언어와 이와 관련된 문서, 버그 수정,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또는 신규 버전을 의미한다.
- 18.14 “오픈 소스”란 소프트웨어의 사용, 수정, 또는 배포 조건으로 해당 소프트웨어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와 결합되거나 같이 배포되는 소프트웨어가 (i) 소스 코드 형태로 공개 또는 배포되거나, (ii) 파생물을 만들기 위해 라이선스 되거나, (iii) 무상재배포를 요건으로 하는 라이선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 18.15 “아웃소싱 서비스”란 HPE가 (i) “고객”의 데이터 처리 활동의 전부나 일부의 일상적인 운영에

- 대한 책임을 부담하거나; (ii) 시설 관리, 시스템 통합 또는 유사한 용역을 수행하거나; (iii) “라이선스 제품”을 “고객”에게 설치 및 공급 또는 달리 제공하거나; (iv) HPE가 “라이선스 제품”의 이용이나 이에 대한 접속을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공급하거나; (v) “고객”에게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라이선스 제품”이 “고객”의 사업장이나 제3자 장소 또는 HPE 시설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 “고객” 또는 HPE가 라이선스를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고객”이나 HPE 또는 제3자 소유 장비 상에서 사용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기술된 서비스는 “아웃소싱 서비스”에 해당한다.
- 18.16 “임직원”이란 HPE에게 “용역” 또는 “산출물”을 공급하기 위해 “공급자”나 그 “하도급자”가 고용하거나 계약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 18.17 “기존 지식재산”이란 “공급자”가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각 당사자 또는 제3자가 구상하거나 개발한 “지식재산”이나 시점과 상관없이 “산출물”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구상되거나 개발된 “지식재산”을 의미한다.
- 18.18 “프라임 계약”이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HPE와 “고객” 간에 체결되거나 제안된 계약 또는 SOW를 의미한다.
- 18.19 “제품”이란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제공하거나 제공해야 할 하드웨어 또는 “라이선스 제품”을 의미한다.
- 18.20 “프로젝트”란 HPE가 “공급자”로부터 “용역” 또는 “산출물”을 구매하여 “프라임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 18.21 “발주서”란 HPE가 “공급자”에게 “계약”에 따라 발송하는 서면(전자, 출력본 또는 팩스) 발주서를 의미한다.
- 18.22 “용역”이란 “소프트웨어 부록문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라이선스 제품”에 대한 “지원 및 유지” 또는 “산출물”을 포함한 SOW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공급자”가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정한 용역을 의미한다.
- 18.23 “현장”이란 “용역”이 제공되는 모든 HPE, 제3자, 또는 “고객”의 장소를 의미한다.
- 18.24 “소프트웨어 부록문서”란 “라이선스 제품” 및 “지원 및 유지”(필요할 경우)를 기술하는 “계약”에 첨부된 “GP 표준 조건 분류 부록문서”를 의미한다.
- 18.25 “SOW”나 “업무기술서”란 “공급자”가 HPE에게 제공할 “용역” 또는 “산출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HPE 및 “공급자”가 서명한 문서를 의미한다.

- 18.26 “하도급자”란 “공급자”와 직접 계약이 있는 모든 제3자나 “계약”에 따른 “용역”의 일부를 수행할 모든 다른 하도급자를 의미한다.
- 18.27 “지원 및 유지”란 “소프트웨어 부록문서”에 따라 “공급자”가 제공해야 할 “라이선스 제품”에 대한 지원 및 유지 조건을 의미한다.
- 18.28 “판매 목적”란 HPE의 “고객”에 대한 재판매, “고객”을 위한 HPE에 의한 사용, “고객”에 의한 사용, 그리고 HPE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HPE를 대신해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자에 의한 모든 관련된 사용을 의미한다.